

## 경운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「학칙」 제38조의2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 회계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 및 자격)** ① 위원회는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), 학생, 관련 전문가의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4명 (재단인사 포함)
2. 학생 3명
3. 관련 전문가 2명

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위원 수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총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학생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③ 교직원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기획처장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실무책임자인 사무처장과 경리과장으로 각각 정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구성단위별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: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
2. 직원 :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
3. 학생 :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
4. 관련 전문가 : 관련분야 경력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등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

⑥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교직원 : 휴직, 퇴직,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
2. 학생 : 휴학, 수료, 졸업, 교환학생파견,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3. 관련 전문가 :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자격 또는 직위 상실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⑦ 위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.

⑧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, 즉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**제4조(선임기준 및 방법)** ① 위원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각 구성단위별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: 대학 회계, 재정 및 경영 분야의 업무 경력 또는 전문성이 우수한 자
2. 학생 :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에 충실한 자
3. 관련 전문가 : 회계, 재정, 경영 분야의 업무 경력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등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

② 총장의 추천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위원 추천 및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을 제외한 교직원 위원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2. 학생 위원 3명은 총학생회, 대의원회, 학생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.
3. 관련 전문가 2명은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의장)** ① 의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 선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7조(해임 및 사임)** ① 위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해임된다.

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,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의장이 요청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 후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9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10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·날인을 받아 보존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,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회의록 작성과 제2항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자료요청)** 위원회는 그 의결로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(예산)**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4조(비밀유지)**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기타)**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